##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21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진선미·신영대·임오경

이학영 · 한병도 · 안태준

한정애 · 김영호 · 임호선

장철민·정태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소위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 도록 한 시설)이 증가하면서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 등으로 인한 교통 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은 승차구매시설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청장의 경우 현재 매년 작성하고 있는 교통사고 통계에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은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승차구매시설 관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5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5조의3(교통사고 통계의 작성·관리) ① 경찰청장은 효과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교통사고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 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45조의3(교통사고 통계의 작
	성·관리) ① 경찰청장은 효과
	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에 관한 통계
	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통
	계를 작성할 때에는 교통사고
	의 유형 등에 따른 발생건수,
	사망자 및 부상자 수 등에 관
	하여 작성하되, 승차구매시설
	(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시설을
	말한다)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통
	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